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13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정이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 하고자 함.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규제 내용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「행정규제 기본법」 제4조(규제 법정주의)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,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기존 조례 제10조에 명시된 위탁운영 취소 사유 중 제4호 ‘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’ 는 규제법정주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한 것은 법리적,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기존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,
‘기타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’ 도
단체장의 재량범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, 이를 존속시킨
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- ※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11조
(위탁의 취소)의 경우, 아래 3, 5호를 삭제하였음.
 - 3.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 -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

< 참고자료 >

1.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 현황

I | 위탁개요

큰 거
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5조, 제6조
-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4조

기 간 : 2015. 6. 12 ~ 2018. 6. 11(3년간)

수탁자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(회장 심의보)

Ⅱ | 위탁대상

□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(청주시 흥덕구 복대동)
- 규모 : 부지 4,121㎡, 연면적 5,570.51㎡(지상 5층, 지하 1층)
 - 개관일 : '06. 9. 8(준공일 '06. 6. 15)
- 직원현황 : 9명(센터장 1, 직원 8)
- 입주단체 : 14개 기관·단체
- 주요사업
 - 사회복지자원의 연계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
 -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
 -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
 -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,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·컨설팅
 -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
 -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

□ 예산규모

- 지원액 : 440백만원(도비, 예산 변경가능)
- 지원내역 :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

Ⅲ | 그동안 위탁 경과

□ 위탁경과

- 1회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(2006. 6. 13 ~ 2009. 6. 12)
- 2회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(2009. 6. 12 ~ 2012. 6. 11)
- 3회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(2012. 6. 12 ~ 2015. 6. 11)